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
-

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 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 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경력	1)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	○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구분		자격·학력·경력 인정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보조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자격을 취득	기계·전기 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소방시설 설계업	인력	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3)부터 6)까지를 졸업한 사람	사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 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 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 는 사람
	전기 분야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 및 8)의 자격 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2)를 졸업한 사람	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 력이 있는 사람 마.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 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나 목1)에 해당하는 학과(이하 “고등학 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 람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

	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 소방시설관리사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구 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년 이상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을 따른 기술등급

구분		기술자격
보조 기술 인력	특급 점검 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

		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 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 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학력·경력자	경력자
보조 기술 인력	고급 점검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